

국무원령
제536호

<유제품 품질안전 관리감독조례>는 이미 2008년 10월 6일 국무원 제28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현재 공표되며 공표일부터 시행된다.

총리 원자바오
2008년 10월 9일

유제품 품질안전 관리감독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유제품 품질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유제품 품질안전을 보증하며 대중의 신체건강과 생명 안전을 보장하고 낙농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유제품이란 신선유와 유제품을 가리킨다.

유제품 품질안전 관리감독에 본 조례를 적용하며 법률 상에 유제품 품질안전 감독관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규정한다.

제3조

가축 사육업자, 신선유 구입자, 유제품생산기업, 판매자가 생산, 매입, 운송, 판매한 유제품 품질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이들이 유제품 품질안전의 제1책임자이다.

제4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유제품 품질안전 관리감독에 대한 총 책임을 진다.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목축/수의 주무부처는 가축사육, 신선유 생산단계, 매입단계의 관리감독을 책임진다. 현급이상 품질감독 검사검역부처는 유제품 생산단계와 유제품 수출입단계의 관리감독을 책임진다. 현급이상 공상행정관리부처는 유제품 판매단계의 관리감독을 책임진다. 현급이상 식품약품감독부처는 유제품 요식서비스단계의 관리감독을 책임진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위생주무부처는 직권에 따라 유제품 품질안전 관리감독의 전반적인 협조, 식품안전 중대사고 조사에 책임을 진다.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처는 각자의 직무범위 내에서 유제품 품질안전 관리감독의 기타 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유제품 품질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관련 법과 행정법의 규정에 따라 즉각 보고하고 처리한다. 심각한 결과 또는 악영향을 초래한 경우 관련 인민정부와 유관부처의 지도 책임을 지는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제6조

신선유와 유제품은 유제품 품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해야만 한다. 유제품 품질안전국가표준은 국무원 위생주무부처가 제정하며 위험 모니터링과 위험평가결과에 따라 즉시 수정한다.

유제품 품질안전국가표준에는 유제품 중의 병원성미생물, 잔류농약, 잔류 수의약, 중금속, 기타 인체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대한 제한량 규정, 유제품 생산관리과정 중의 위생 요구사항, 통용되는 유제품 검사방법과 규정, 유제품 안전관련 품질 요구사항, 기타 유제품 품질안전국가표준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영유아 분류의 품질안전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영유아 신체 특징과 성장발육을 위한 필요요소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영유아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보증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주무부처는 질병정보와 관리감독부처의 관리감독정보 등에 근거하여 유제품 중 비식품용 화학물질과 기타 인체건강을 해하는 물질이 첨가되었거나 첨가될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해 즉각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상응하는 모니터링, 검사, 감독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신선유의 생산, 매입, 저장, 운송, 판매 과정 중에 어떠한 물질도 첨가되는 것을 금지한다.

유제품 생산과정 중에 비식품용 화학물질 또는 인체 건강을 해할 수 있는 물질이 첨가되는 것을 금지한다.

제8조

국무원 목축/수의 주무부처는 국무원 발전개혁부, 공업신식화부, 상무부와 함께 전국 낙농업의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유제품 자원 기지를 건설하고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여 낙농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국가 낙농업 발전계획에 근거하여 본 행정구역 내 가축사육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정하고 과학적으로 신선유의 생산과 매입 구도를 편성해야 한다.

제9조

관련 업계 협회는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업계의 신뢰도를 구축하며 가축사육업자, 신선유 매입자, 유제품 생산기업, 판매자의 준법생산경영을 지도하고 규제해야 한다.

제2장 가축사육

제10조

중국 정부는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가축사육업자가 신선유 품질안전수준을 높이도록 장려/인도/지원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급 재정예산 안에서 낙농업 발전 자금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가축사육업자, 낙농업 전문생산 협동조합 등에 신용대출 지원을 장려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가축 정책성 보험제도를 수립하여 보험에 가입한 가축사육업자에게 보험비를 보조해준다.

제11조

목축/수의 기술보급기관은 가축사육업자에게 사육기술훈련, 우량종 보급, 질병방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유제품 생산기업과 기타 관련 생산관리자가 가축사육업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12조 가축사육장, 소규모 사육지를 설립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 (1) 소재지 인민정부가确定的 본 행정구역 가축사육규모에 부합해야 한다
- (2) 사육규모와 상응하는 장소와 부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서비스를 제공할 목축/수의 기술인원이 있어야 한다
- (4) 법률과 행정법규정, 국무원 목축/수의 주무부처가 규정한 방역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5) 가축 분뇨, 폐수, 기타 고체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메탄가스 탱크 또는 기타 무해화 처리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6) 신선유 생산, 판매 운송 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 (7) 법률, 행정법 규정의 기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축사육장, 소규모 사육지 개설자는 사육장과 소규모 사육지의 명칭, 주소, 사육 품종, 사육규모를 사육장과 소규모 사육지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목축/수의 주무부처에 서류 등록해야만 한다.

제13조 가축사육장은 반드시 사육 파일을 만들어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1) 가축 품종, 수량, 번식기록, 표식상황, 원산지, 사육장에 들고 나간 날짜
- (2) 사료, 사료첨가제, 수의약 등 투입품의 출처, 명칭, 사용대상, 시간과 사용량
- (3) 검역, 면역, 소독 상황
- (4) 가축 발병, 사망, 무해화 처리 상황
- (5) 신선유 생산, 검사, 판매 상황
- (6) 국무원 목축/수의 주무부처가 규정한 기타 내용

소규모 가축사육지의 개설자는 단계적으로 사육 파일을 작성해야만 한다.

제14조

가축 사육에 종사할 때 국가가 사용을 금지하는 사료, 사료첨가제, 수의약, 기타 동물과 인체에 직접 또는 잠재적 위험을 가져오는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규정된 약 투약기간과 약 중단기간에 가축이 생산한 신선유의 판매를 금지한다.

제15조

가축사육자는 사육하는 가축이 국무원 목축/수의 주무부처가 규정한 건강표준에 부합함을 보증하고 가축이 강제면역을 받았음을 보장해야 한다.

동물질병예방통제기구는 가축의 건강상태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사결과 건강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각 격리, 치료,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제16조

가축사육자는 가축과 사육장소에 대한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가축의 감염 또는 감염 의심 상황이 발견된 경우 즉각 보고하고 신선유 생산을 중지하며 격리 등의 통제 조치를 위하여 질병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가축사육자는 가축사육과정에서 발생한 배설물, 폐기물을 즉각 치우고 처리해야 한다.

제17조

가축사육자는 국무원 목축/수의 주무부처가 제정한 신선유 생산기술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 직접 착유작업을 담당하는 인원은 반드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효과적인 입증을 해야만 한다.

가축사육자는 착유 설비, 신선유 저장설비 등을 즉각 세척, 소독하여 신선유의 오염 발생을 피해야 한다.

제18조

신선유는 냉장보관해야 한다. 2시간 동안 냉장 보관하지 않은 신선유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신선유 매입

제19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목축/수의 주무부처는 현지 유제품 자원 분포 상황에 근거하여 가축사육자의 편의와 규모와 사육을 촉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신선유 매입소의 설립을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분포해야 한다. 필요할 때에 신선유의 집중적이고 정기적인 매입을 시행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유제품 생산기업이 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신선유 매입소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신선유 매입소에서 매입하도록 장려한다.

제20조

신선유 매입소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취득한 유제품 생산기업, 가축사육장, 낙농업 전문 생산 협동조합이 개설해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목축/수의 주무부처가 발급한 신선유 매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 (1) 신선유 매입소 설립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 (2) 환경보호와 위생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매입 장소가 있어야 한다.
- (3) 생산량에 상응하는 냉각, 냉장, 신선유지시설과 저온운송설비를 갖춰야 한다.
- (4) 검사항목에 상응하는 화학실험, 계량, 검사기기설비를 갖춰야 한다.
- (5) 훈련 교육에 합격하고 건강상태를 효과적으로 입증한 작업인원이 있어야 한다.
- (6) 위생관리와 품질안전 보장제도를 갖춰야 한다.

신선유 매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신선유 매입소는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이 신선유 매입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이 신선유를 매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 정부는 신선유 매입소에 대한 지원과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계화 착유와 신선유 냉장운송능력을 제고한다.

제21조

신선유 매입소는 착유시설, 신선유 저장운송시설 등을 즉시 세척, 소독하여 신선유의 오염 발생을 피한다.

신선유 매입소는 유제품 품질안전국가표준에 따라 매입한 신선유에 대한 통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비용은 가축사육자에게서 수취해서는 안 된다.

신선유 매입소는 신선유의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제22조

신선유 매입소는 신선유 매입, 판매, 검사기록제를 수립해야 한다. 신선유 매입, 판매, 검사 기록에는 가축주 성명, 1회 매입량, 신선유 검사결과, 판매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록 보존기간은 2년이다.

제23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가격주무부처는 신선유 가격의 감독과 통보를 강화하고 시장수급

정보와 가격정보를 즉시 발표해야 한다. 필요할 때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가격부처 목축/수의 등 부처, 업계협회, 유제품 생산기업, 신선유 매입소, 가축사육자로 구성된 신선유 가격 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신선유 거래 참고가격을 확정하고 매매 쌍방이 계약 체결 시에 참고하도록 제공한다.

신선유 매매 쌍방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선유 매매계약 양식은 국무원 목축/수의 주무부처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처와 함께 제정하고 공표한다.

제24조 아래의 신선유는 매입을 금지한다.

- (1) 검사결과 건강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검역에 합격하지 않은 가축이 생산한 신선유
- (2) 가축이 분만 후 7일 안에 생산한 초유. 그러나 초유를 원료로 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예외
- (3) 규정된 약 사용기간과 약 중단기간에 가축이 생산한 신선유
- (4) 기타 유제품 품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신선유

위의 조항에서 규정한 신선유는 검사에 착오가 없음이 확인되면 폐기 또는 기타 무해화처리 조치를 취한다.

제25조

신선유 보관용기는 국가의 관련 위생표준에 부합해야만 하며 착유 후 2시간 안에 0 - 4℃까지 온도를 낮춰야 한다.

신선유 운송차량은 반드시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목축/수의 주무부처가 심사 발급한 신선유 선적허가증명서를 획득하고 차량에 신선유 인수증을 휴대해야 한다. 인수증에는 신선유 매입소의 명칭, 신선유 수량, 인수시간, 신선유 매입소 취급인, 호송원, 운전기사, 인수직원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신선유 인수증은 1개의 양식으로 2부 작성되며 신선유 매입소와 유제품 생산자가 각각 보관하고 보존 기간은 2년이다. 선적허가증명과 인수증 양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목축/수의 주무부처가 제정한다.

제2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신선유 품질안전 모니터링시스템을 강화하고 상응하는 인원과 설비를 배치하여 모니터링 능력과 모니터링 임무가 호응되도록 한다.

제27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목축/수의 주무부처는 신선유 품질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선유 품질안전 모니터링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신선유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진행하고 법정권한에 따라 즉시 모니터링 표본추출조사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모니터링 표본추출조사를 할 때 표본추출인원에 의해 어떠한 비용도 수취되지 않고 모든 비용은 동급 재정부처가 지출한다.

제4장 유제품 생산

제28조

유제품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소재지 품질검사부처가 발급한 식품생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 (1) 중국 낙농업 산업정책에 부합해야 한다
- (2) 작업장의 부지, 설계가 중국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3) 생산한 유제품 품종, 수량과 상응하는 생산, 포장, 검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4) 상응하는 전문 기술인력과 품질검사인원이 있어야 한다.
- (5) 환경보호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폐수, 폐기가스, 쓰레기 등 오염물의 처리시설이 있어야 한다.
- (6) 교육훈련에 합격하고 건강상태를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종사자가 있어야 한다.
- (7) 법률, 행정법에서 규정하는 기타 직권

품질감독부처는 유제품 생산기업에게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할 때 반드시 소재지 공업 업계관리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유제품 생산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29조

유제품 생산기업은 품질관리제도를 수립하고 품질안전관리조치를 취하여 원료 도입에서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유제품 생산의 전 과정에 대한 품질통제를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30조

유제품 생산기업은 생산 규정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유제품 생산기업이 HACCP 시스템을 실시하여 유제품 안전관리수준을 제고하도록 장려한다. 영유아 분유 생산기업은 반드시 HACCP 시스템을 실시한다.

생산 규정과 HACCP 시스템의 인증을 통과한 유제품 생산기업에 대해 인증기관은 법에 의거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증 요구사항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기업은 법에 따라 인증을 말소하고 즉각 관련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31조

유제품 생산기업은 신선유 입하 검사제도를 수립하여 매입한 신선유를 로트 검사한다. 품질 검사정황, 공급자의 이름과 연락처, 입하일자 등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운송차량의 신선유 인수증을 검사한다. 검사기록과 신선유 인수증은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유제품 생산기업은 신선유 매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조직이나 개인에게서 신선유를 매입해서는 안 된다.

유제품 생산기업은 수의약 등 화학물질 잔류기준이 초과하였거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 병을 유발하는 기생충과 미생물, 바이오 독소가 함유되었거나 기타 유제품 품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신선유를 매입해서는 안 된다.

제32조

유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신선유, 보조제, 첨가제 등은 법률과 행정법 규정, 유제품 품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생산된 유제품은 저온살균, 고온살균, 초고온살균, 기타 효과적인 방식으로 살균해야 한다.

발효유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균종은 순정상태에 무해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감정하여 잡균에 의한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영유아 분유를 생산하는 경우 영유아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보증해야 하고 영유아 신체건강과 성장발육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해서는 안 된다.

제33조

유제품의 포장에는 반드시 라벨이 있어야 한다. 라벨에는 상품명, 규격, 순함량, 생산일자, 성분, 배합표, 생산기업명, 주소, 연락처, 보존기한, 제품표준코드, 저장조건, 사용한 식품첨가제의 화학통용명칭, 식품생산허가증번호, 법률과 행정법 규정과 유제품 품질안전국가표준에서 규정하는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는 기타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분유, 버터, 유청분말 등의 원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액상유는 반드시 포장에 기재한다. 복합 원유를 원료로 사용하여 액상유를 생산한 경우에는 ‘복합원유’라는 글자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제품 원료 배합에 복합원유에 함유된 원료와 비율을 사실대로 기재한다.

영유아 분유의 라벨에는 주요 영양성분과 영양성분의 함량을 기재해야 하며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한다.

제34조

출고된 유제품은 유제품 품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해야만 한다.

유제품 생산기업은 출고된 유제품에 대해 로트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보고서를 보존하며 샘플을 남겨둔다. 검사내용에는 유제품에 대한 감각기관 테스트 지표, 이화학적 지표, 위생지표, 유제품 중에 사용한 첨가제와 안정제, 요구르트에 사용한 균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유아 분유는 출고전 반드시 영양성분 검사를 해야만 한다. 검사에 합격한 유제품에는 검사합격등록번호가 표기되어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출고해서는 안 된다. 검사보고서는 반드시 2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제35조

유제품 생산기업은 판매한 유제품명, 수량, 생산일자, 생산로트번호, 검사합격등록번호, 구매자명과 연락처, 판매일자 등이 사실대로 기록되어야 한다.

제36조

유제품 생산기업은 생산한 유제품이 유제품 품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인체건강

과 생명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거나 영유아 신체건강과 성장발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즉각 생산을 중단하고 관련 부처에 보고하며 판매자, 소비자에게 고지한다. 이미 출고되었거나 출시되어 판매된 유제품은 리콜하고 리콜 상황을 기록한다.

유제품 생산기업은 리콜한 유제품에 대해 소각 또는 무해화 처리 조치를 취하여 재차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제5장 유제품 판매

제37조 유제품 판매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식품안전관리감독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처에 관련 허가증 취득을 신청해야 한다.

제38조 유제품 판매자는 입하검사제도를 수립하고 이행하여 공급업체의 경영자격을 심사하고 유제품 합격증명과 제품표식을 검사한다. 유제품 입하 장부를 만들어 유제품 명칭, 규격, 수량, 공급업체와 연락처, 입하시간 등이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한다. 유제품 도매업에 종사하는 판매기업은 유제품 판매장부를 만들어 도매 판매한 유제품 품종, 규격, 수량, 프로세스 등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한다. 입하장부와 판매장부의 보존기한은 2년 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제39조 유제품 판매자는 반드시 유제품 판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온상태로 보존이 필요한 유제품을 판매할 경우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또는 냉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0조 품질 합격증명이 없거나 라벨이 없거나 라벨이 손상되어 식별이 불가능한 유제품의 매입과 판매를 금지한다.

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되었거나 유제품 품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유제품의 매입과 판매를 금지한다.

제41조 유제품 판매자는 원산지를 위조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작업장명, 작업장 주소를 위조 또는 도용하거나 인증표시 등 품질표시를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42조 유제품 품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고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을 저해하거나 영유아 신체건강과 성장발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유제품에 대해 판매자는 즉각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유제품은 회수하여 회수정황을 기록한다.

유제품 판매자가 판매된 유제품에서 위 조항에서의 정황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각 소재지 공상행정관리 등 관련 부처에 보고하고 유제품 생산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제43조 유제품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매입전표를 제공하여 불합격 유제품의 교환, 환불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유제품 판매자가 위의 규정에 따라 교환, 환불 등의 의무를 이행한 뒤 유제품 생산기업 또는 공급업체에게 책임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유제품 생산기업 또는 공급업체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 수입한 유제품은 유제품 품질안전국가표준에 근거하여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유제품 품질안전국가표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관련부처가 지정한 해외 관련 표준을 참고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45조 유제품을 수출한 생산자, 판매자는 수출한 유제품이 유제품 품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고 수입국(지역)의 표준 또는 계약서의 요구사항에 부합함을 보증해야만 한다.

제6장 감독조사

제46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목축/수의 주무부처는 가축사육, 신선유 생산단계, 매입단계의 감독조사

를 강화해야 한다. 현금 이상 품질감독검사검역부처는 유제품 생산단계와 유제품 수출입단계에 대한 감독조사를 강화해야만 한다. 현금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처는 유제품 판매단계의 감독조사를 강화해야만 한다. 현금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처는 유제품 요식서비스 단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만 한다. 감독조사부처간, 감독조사부처와 기타 유관부처간에는 유제품 품질안전 감독관리정보를 즉각 통보해야 한다.

목축/수의,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등 부처는 정기적으로 감독조사를 실시하며 감독조사의 정황과 처리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유제품에 대해 표본추출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어떠한 비용도 수취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비용은 동등한 등급의 재정부처가 지불한다.

제47조 목축/수의,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등 부처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감독조사를 실시할 때 아래의 직권을 행사한다.

- (1) 현장조사 실시
- (2) 유관 인원에게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상황에 대해 파악
- (3) 관련 계약서, 영수증, 장부, 검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열람 또는 복제
- (4) 유제품 품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는 유제품과 불법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는 신선유, 부재료, 첨가제를 차압, 압류
- (5) 불법으로 유제품 생산관리활동에 종사한 혐의가 있는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불법 생산관리에 사용한 도구와 설비를 차압
- (6) 법률, 행정법에서 규정하는 기타 직권

제48조 현금 이상 품질감독부처, 공상행정관리부처는 감독조사를 실시하는 과정 중에 유제품 품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에 위험요소가 존재하거나 영유아 신체건강과 성장발육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유제품에 대해 생산기업에게 리콜과 판매자에게 판매중단을 명령하고 감독한다.

제49조 현금 이상 인민정부의 가격주무부처는 신선유 매매과정 중에 등급을 낮추어 가격을 깎거나 가격을 속이거나 가격을 담합하는 등 불공정 가격 행위에 대한 감독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50조 목축/수의 주무부처, 품질감독부처, 공상행정관리부처는 유제품 생산관리자의 불법행위를 기록하고 즉각 중국 인민은행에 정보를 제공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기업신용정보 데이터에 이를 적용한다.

제51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목축/수의 주무부처, 품질감독부처, 공상행정관리부처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유제품 품질안전감독관리정보를 발표한다. 관련 감독관리부처는 동급 위생주무부처에 유제품 품질안전사고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유제품 품질안전 중대사고정보는 성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주무부처가 공표한다.

제52조 관련 감독관리부처가 가축사육자, 신선유 매입자, 유제품 생산기업, 판매자에게 범죄혐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각 공안기관에 넘겨 조사에 착수하도록 해야 한다.

제53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 목축/수의, 위생,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 등 부처에 유제품 생산관리 과정 중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할 권리가 있다. 목축/수의, 위생,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 등 부처는 부처의 이메일 주소와 신고 전화번호를 반드시 공표해야만 한다. 신고를 접수하면 반드시 온전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부처는 신고 사항이 해당 부처의 직무 범위 안에 포함될 경우 즉각 법에 의거 처리하고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 즉각 답변해야 한다. 신고 사항이 해당 부처의 직무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처리 권한이 있는 부서로 즉각 이관하여 처리 권한이 있는 부서가 즉각 처리하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7장 법적 책임

제54조 신선유 매입자, 유제품 생산기업이 신선유 매입과 유제품 생산 과정에서 비식품용 화학물질 또는 기타 인체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 형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증서를 발급한 기관은 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목축/수의 주무부처, 품질감독부처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불법 소득, 불법 생산한 유제품, 관련 도구와 설비 등 물품을 몰수하고 불법 유제품의 현금가치

15배 이상 30배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 발급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55조

유제품 품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유제품을 생산, 판매한 경우 형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증서를 발급한 기관은 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목축/수의 주무부처, 품질감독부처, 공상행정관리부처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불법소득, 불법 유제품, 관련 도구와 설비 등 물품을 몰수하고 불법 유제품의 현금가치 10배 이상 20배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 발급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56조

유제품 생산기업이 본 조례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제품 품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에 위험요소가 존재하거나 영유아 신체건강과 성장발육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유제품에 대해 생산 중단이나 리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품질감독부처가 생산 중단 또는 리콜을 명령한다. 생산 중단 또는 리콜 명령을 거절한 경우 불법소득, 불법 유제품, 관련 도구와 설비 등 물품을 몰수하고 불법 유제품의 현금가치 15배 이상 30배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 발급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57조

유제품 판매자가 본 조례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제품 품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에 위험요소가 존재하거나 영유아 신체건강과 성장발육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유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이나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처가 판매 중단 또는 회수를 명령한다. 판매 중단 또는 회수 명령을 거절한 경우 불법소득, 불법 유제품, 관련 도구와 설비 등 물품을 몰수하고 불법 유제품의 현금가치 15배 이상 30배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 발급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58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유아 분유 생산과정에서 비식품용 화학물질 또는 기타 인체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 또는 영유아 분유 영양성분이 부족하거나 유제품 품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한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처벌한다.

제59조

가축사육자, 신선유 매입자, 유제품 생산기업, 판매자가 유제품 품질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고하지 않거나 처리하지 않은 경우 목축/수의,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 등 부처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경우 조업 중단을 명령하고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발급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0조

아래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 이상 지방인민정부 목축/수의 주무부처가 불법소득, 불법 매입한 신선유, 관련 설비와 시설 등 물품을 몰수하고 불법 유제품 현금가치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증이 있는 경우 발급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 (1) 신선유 매입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신선유를 매입한 경우
- (2) 신선유 매입소가 신선유 매입허가증을 취득한 이후 허가조건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신선유 매입에 종사한 경우
- (3) 신선유 매입소가 본 조례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매입이 금지된 신선유를 매입한 경우

제61조

유제품 생산기업과 판매자가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허가증을 취득한 이후 법정 조건과 법정 요구사항에 따라 생산 판매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현금 이상 지방 품질감독부처, 공상행정관리부처가 <국무원의 식품 등 제품안전감독관리강화에 관한 특별규정> 등의 법률과 행정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2조

목축/수의, 위생,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등 부처가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직무를 이행하지 않아 악영향을 초래하였거나 직권남용이나 기타 배임행위를 한 경우 감찰기관 또는 임명/해임기관이 주요 책임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주요 인원, 기타 직접 책임을 지는 인원에게 중과실 기록 또는 계급 강등의 처분을 내린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해직 또는 제명 처분을 내린다.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에 의거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제8장 부칙

제63조

초원에서 방목 사육한 가축이 생산한 신선유의 매입방법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가 본 조례를 참고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한다.

제64조 본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된다.